

2019년도 제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5. 3.(금요일), 11: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 전용준(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4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442건(안전번호 제2019-28923호~30162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제2019-28927호~30162호) 2,438건 중 140건은 이미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나머지 2,29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 그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 1개 안전(제2019-28923호)은 인터넷호스팅사업자인 '○○'에 대한 시정 조치 권고가 필요해 보여 가결하고, 나스를 DDNS 서비스에 연결하여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2개 안전(제2019-28924호, 28925호)은 시정권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서비스 삭제 또는 전송중단 권한이 있는 주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부결하고, 블로그 이용자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 1개 안전(안전번호 제2019-28926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므로 가결하기로 의결함

III.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4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물명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C 위원 :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함
- A 위원 : 동의함
전차 회의록 내용에도 이상이 없으며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임
- B 위원 :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으며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찬성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관련 회의록은 비공개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B 위원 : 동의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정보제공청구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며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28923호~30162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2,442건임
(보호원에서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28923호는 일반인이 실명으로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국내 사이트인 '□□'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는 해외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직접 올린 사안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2892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 검색 서비스(WHOIS)에서 운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검색 화면을 보여주면서)도메인 대행업체 (registrar)는 미국 회사인 'GoDaddy'로 확인됨

- A 위원 : 'GoDaddy'는 외국 업체로,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운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인터넷호스팅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호스팅업체가 이용자에 대해 항상 통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다고 생각함

- B 위원 : 그러나 이는 호스팅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사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정현순 전문위원 : 일단 호스팅사업자가 서버 공간을 대여하는 이용자와 맺은 계약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외부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호원에서는 공문을 보내놓고 호스팅사업자가 권한이 없어서 정당하게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종결 처리하고 있음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보호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명령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는 없었음

- B 위원 : 인터넷호스팅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에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28923호는 인터넷호스팅사업자인 '○○'에 대한 시정 조치 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28924, 2892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 2019-28924, 28925호는 일반인이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NAS에 DDNS(Dynamic Domain Name System) 서비스를 연결하여 무단 복제한 어문저작물을 텍스트파일 형태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A 위원 : NAS는 개인용 클라우드라고 이해하면 됨
블로그나 카페의 게시물과 같이 해당 url주소가 발견된 위치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준 url주소 외에 해당 링크주소 게시물은 보호원의 조사 담당자가 찾지 못함
- A 위원 : 그렇다면 시정권고가 어려워 보임
- B 위원 : 링크가 설정된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어 부결 의견임
- A 위원 : 서비스 제공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 부결 의견임

- C 위원 : 이견 없이 부결 의견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28924, 28925호는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2892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국민신문고 민원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28926호는 일반인의 익명 신고를 바탕으로 보호원이 조사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것임
 게시물 주소를 특정하여 신고한 것은 아니고 블로그 전체를 신고한 것으로 보호원 조사 담당자가 '서로 이웃'을 맺어 조사하였음

- A 위원 :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이므로 시정권고 대상으로 사료됨
 다만 보호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까지 서로 이웃을 맺거나, 폐쇄적 성격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안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향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B 위원 : 이견 없이 가결 의견임

- C 위원 : 동의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28926호는 다수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자는 광고 게재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28927호~30162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 C 위원 :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28927호~30162호 게시물 2,438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140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 2,298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만장일치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28924호 및 제2019-28925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28923호, 제2019-28926호~30162호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140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 2,300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

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전용준 분과위원장이 제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5. 10.

분과위원장 전용준

위원 임진모

위원 박성호